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1.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9월 4일, 정태호의원 등 15인

나. 회부일자: 2024년 9월 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2024. 11. 14.)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4. 11. 19.)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2024. 11.

21.)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정태호 의원)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폭염, 폭한, 가뭄 등 기상재해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온열·한랭질환, 감염병, 우울증이 증가하는 등 기후변화는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으로 하여금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보건의료정책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증진하고 건강관리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건강관리정책의 수립·시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경윤)

「보건의료기본법」(제2절, 제31조부터 제38조까지)에서는 평생국민 건강관리체계로서 여성과 어린이 등 7개 분야(대상)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제37조의2 신설)은 이에 더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라 국민건강 보호·증진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음.

다만,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과 관련한 기본법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38조 및 제40조 등)은 건강 피해에 대한 적응이 포함된 개념으로서 ‘기후위기 적응’을 정의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기후위기 적응대책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은 법안 심사 시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개정안과 같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경우 기후변화가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강선우)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